

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(이은미 의원)

의안 번호	2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6월 5일

발 의 자: 이은미 의원

찬 성 자: 심현정, 이창열, 남진삼의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재정지원 등, 관계기관의 협조, 홍보 및 교육(안 제4조 ~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5. 7. ~ 2024. 5. 27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4. 24. ~ 2024. 5. 2.(9일간), 의견 없음.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, [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3조](#)에 따라 등록된 평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[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](#)에 따른다.

제5조(관계기관의 협조)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에 힘쓰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령]

범죄피해자 보호법

[시행 2017. 3. 14.]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가. 관련조문: 조례안 제4조(재정지원 등)

- 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지급 현황>

(단위 : 천원)

2020	2021	2022	2023	2024	비고
25,000	25,000	30,000	30,000	30,000	

※(사)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(태백시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) 운영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